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옥식 의원 외 4인

##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9
----------	-----

제출년월일 : 2005. 12. .  
제출자 : 윤옥식의원 외 4인

###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 시키는 한편, 관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안 제2조)
- 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안 제3조)
- 다.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첫째·둘째는 각 50만원, 셋째이상은 100만원을 신생아 순서별로 차등 지급한다.(안 제5조)

### 3. 자치법규안 : 붙임

### 4. 참고사항 : 붙임

- 관련법령 발췌

##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 시키는 한편, 관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라 함은 갓난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중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제4조(지원대상 제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액)** 신생아 1인당 출산장려금은 첫째 · 둘째는 각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신생아 순서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매월 말일까지 신생아의 출생 신고자를 파악하여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신생아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에 등재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대상 신생아 부모 또는 양육 보호자의 금융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양 보 호 자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 관계			의자녀 중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분만 의료기관			분만일자	년	월	일
	참고사항						
주소	( )						
전화번호	자택			H.P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영주시 출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영주시장 귀하

※ 신생아가 생태아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 관련법령(발췌)

###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